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꾸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84호 2012. 4. 5.(목)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7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8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9호(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0호(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1호(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정수조례 폐지조례) 1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2호(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 17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3호(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0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9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4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2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41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27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57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조 제6항 : 영 제17조 → 영 제40조 영 제17조의2 → 영 제41조 제1항 ○ 제5조 제5호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3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영 제17조”를 “영 제40조”로 하고, “영 제17조의2”를 “영 제41조”로 한다.

제5조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1조 :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3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으므로 평가순위 하위 10%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은 의미가 없어 삭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통장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평가순위 하위 10%는 재위촉 대상 에서 제외한다는 사항) 삭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3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 ·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 · 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다만, 통장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평가순위 하위 10%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추진협의 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기업·행정이 협의하여 작성한 연수의제21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및 책무(제1조~제4조) ○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기구와 임원에 대한 사항(제5조~제7조) ○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 총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제10조~제13조) ○ 회의(총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등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제14조~제19조) ○ 재정의 지원, 정산, 집행, 결산, 감사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사항(제20조~제25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기업·행정이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연수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수의제21”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기업·행정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행정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에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수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연수의제21 실천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주민·기업·행정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5. 지방의제21 관련 정보의 교류 및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6. 그 밖에 협의회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협의회는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대표 : 주민대표, 기업대표, 연수구청장
2. 당연직위원 : 관련분야 실·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위촉직위원 : 주민, 기업체 임직원, 전문가 등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7조(기구와 임원) ① 협의회에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안에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전문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대표, 기업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총회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공동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 2명을 둔다.

제8조(임기) ① 구청장을 제외한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제10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협의회회의 모든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대표, 기업대표,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처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회의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협의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및 관련분야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회의 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인 실·과장은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각 분과 내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행정 실무와 예산·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회의) ①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각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5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협의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

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 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를 요청받은 구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지원 등

제20조(재정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구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집행) 협의회 예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공동대표가 집행한다.

제23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감사) 감사는 총회 정기회의 개최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는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집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위반자에 대 한 과 태 료 부 과. 징수조례 폐지조례	☐ 폐지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07호로 2005년 12월 7일 개정당시 부칙에 따라 2006년 3월 8일 이전 허가분에 한하여 적용하던 토지이용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아닌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1호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제3조 ○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 제4조 ○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제5조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제6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

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조(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한다.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12년 1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6조에 따른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미색모조 80g/㎡)

작성방법

1.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연수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illegible]

۱۱
۱۱.

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시행결과 평가와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활성화로 지역보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역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 폭넓은 위원 구성을 위해 “15인 이내”를 “20명 이내”로 변경 (제2조)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따라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함(제8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3호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20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안전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2012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구에 두는 총수 613 ⇒ 619명 - 집행기관에 두는 총수 595명 ⇒ 601명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변경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현재</td><td>8%이내</td><td>38%이내</td><td>44%이내</td><td>10%이상</td></tr><tr><td>조정</td><td>10%이내</td><td>40%이내</td><td>40%이내</td><td>10%이상</td></tr></table>	구분	6급	7급	8급	9급	현재	8%이내	38%이내	44%이내	10%이상	조정	10%이내	40%이내	40%이내	10%이상
구분	6급	7급	8급	9급												
현재	8%이내	38%이내	44%이내	10%이상												
조정	10%이내	40%이내	40%이내	10%이상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613명” 을 “61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595명” 을 “601명” 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 기능직 공무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이내	40%이내	40%이내	10%이상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중 8명(지방행정7급 2명, 지방행정8급 6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일반직 공무원 8명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집 행 기 관					의회사무 기 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총계	619	601					18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574	558					16
3급	1	1	1				
4급	4	3	3	1			
5급	44	23	23	5	1	12	3
6급이하	525	512					13
기능직계	44	42					2
6급이하	44	42					2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2012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의한 정원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 ☐ 주요 내용 ○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 직렬별 정원 조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중 8명(지방행정7급 2명, 지방행정8급 6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일반직 공무원 8명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③ 별표의 개정예 따라 폐지되는 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합계	619	434	18	42	7	118
정무직	1	1				
일반직	574	395	16	38	7	118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4	23	3	5	1	12
행정	24	12	3			9
의무	3			3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	2				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간호	1			1		
6급	132	99	4	11	1	17
행정	68	51	4			13
세무	4	4				
사회복지	2	2				
전산	1	1				
공업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녹지	2	2				
보건	5	4		1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8	5	0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	3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행정·환경·공업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7급	183	128	6	13	3	33
행정	82	47	6		2	27
세무	19	19				
사회복지	16	10				6
전산	6	5			1	
사서	1	1				
공업	7	7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녹지	3	3				
보건	7	4		3		
의료기술	3			3		
간호	6			6		
환경	5	5				
시설	20	20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환경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8급	162	114	3	8	2	35
행정	79	48	3	1		27
세무	8	8				
사회복지	7	3				4
전산	5	5				
사서	1				1	
공업	8	7			1	
녹지	2	2				
보건	6	3		3		
의료기술	3			3		
간호	1			1		
환경	3	3				
시설	19	19				
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행정·환경	3	3				
행정·보건	1	1				
9급	48	27				21
행정	18	4				14
사회복지	10	7				3
전산	1	1				
공업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	1				
기능직	44	38	2	4		0
6급	4	4				
운전	1	1				
기계	1	1				
조무·사무	2	2				
7급	17	16	1			
운전	6	5	1			
전기	1	1				
기계	2	2				
조무·사무	6	6				
사무	2	2				
8급	16	15	1			
운전	6	6				
전화상담	1	1				
방호	1	1				
기계	1	1				
사무	7	6	1			
9급	7	3		4		
운전	6	2		4		
조무	1	1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2012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의한 정원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과 지방공무원임용령(기능10급 폐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 ☐ 주요 내용 ○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조정 - 구 본청 부서별 정원 조정 (별표 1) -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2) -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3)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2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8명(지방행정 7급 2명, 지방행정8급 6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 직 경력경쟁특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한 증원이며,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미 전환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의 개정예 따라 폐지되는 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34	
전략사업추진단	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시설1
		7급	3	행정1, 시설2,
		8급	-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8급		
기획감사실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7, 행정·사회복지1
		7급	8	행정7, 시설1,
		8급	4	행정3, 전산1
		9급	-	
총무과	계		28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2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8	행정8
		8급	5	행정4, 공업1
		9급	-	
	기능직	소계	5	
		7급	2	조무·사무1, 운전1
		8급	2	사무1, 운전1
		9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 육 지 원 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5	행정3, 시설1, 사서1
		8급	4	행정3(전문계약직1 포함), 행정·사서1
		9급		
	기능직	소계		
		7급		
		8급		
		9급		
문 화 체 육 과	계		13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4
		8급	2	행정2
		9급		
	기능직	소계	2	
		7급	2	조무·사무1, 운전1
재 무 회 계 과	계		19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시설·공업1
		7급	7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2
		8급	3	행정2, 공업1
		9급	-	
	기능직	소계	4	
		6급	1	운전1
		7급	2	조무·사무1, 운전1
		8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정보통신과	계		21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방송통신1
		6급	4	행정1, 전산1, 행정·방송통신2
		7급	7	행정1, 전산4, 방송통신2
		8급	5	행정2, 전산1, 방송통신2
		9급	1	전산1
	기능직	소계	3	
		7급	1	사무1
		8급	2	사무1, 전화상담1
		9급		
세무과	계		41	
	일반직	소계	41	
		5급	1	행정1
		6급	7	세무4, 행정·세무3
		7급	17	세무17
		8급	14	행정3, 전산1, 세무8, 행정·세무2
		9급	2	행정·세무2
	기능직	소계	0	
		8급		
		9급	-	
민원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7급	10	행정6(전임계약직1명포함), 시설4
		8급	13	행정7, 시설5, 전산1
		9급	1	행정·시설1
	기능직	소계	1	
		7급		
		8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주민생활지원과	계		25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1, 사회복지5
		8급	7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7급	2	사무1, 운전1
사회복지과	계		14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4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시설1
		8급	1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4
	기능직	소계	1	
		6급	1	조무·사무1
가정복지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2, 보건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지역경제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공업1
		7급	3	행정1, 공업2
		8급	4	행정2, 공업2
		9급		
일자리창출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사회복지1
청소행정과	계		15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6	행정3, 환경2, 행정·환경1
		8급	2	행정1, 환경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6급	1	조무·사무1
		7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환경보전과	계		17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환경1
		6급	4	환경1, 행정·환경2, 행정·공업·환경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8급	6	행정1, 환경2, 행정·환경3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위생관리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4,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방재과	계		31	
	일반직	소계	24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6급	6	행정2, 시설3, 시설·공업1
		7급	7	행정1, 시설4, 공업2
		8급	8	행정1, 전산1, 시설4, 공업2
		9급	1	시설1
	기능직	소계	7	
		6급	1	기계1
		7급	2	기계1, 전기1
		8급	3	방호1, 운전1, 기계1
		9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건축과	계		18	
	일반직	소계	15	
		5급	1	시설1
		6급	4	행정·시설1, 시설3
		7급	3	시설3
		8급	5	시설5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3	
		7급	2	기계1, 조무·사무1
		8급	1	사무1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4	행정1, 시설2, 공업1
		8급	4	행정1, 시설3
		9급	1	시설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공원녹지과	계		16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녹지1
		6급	3	녹지2, 시설·녹지1
		7급	4	녹지3, 공업1
		8급	6	행정2, 녹지2, 시설·녹지1, 공업1
		9급	1	녹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통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시설1, 행정·공업1
		7급	2	행정2
		8급	5	행정3, 시설2
		9급	2	행정1, 공업1
차량민원과	계		19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1, 세무2, 행정·세무1
		8급	6	행정6
		9급		
	기능직	소계	5	
		7급	2	조무·사무2
		8급	2	운전1, 사무1
		9급	1	조무1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의 회		계	18	
	일반직	소계	16	
		5 급	3	행정3
		6 급	4	행정4
		7 급	6	행정6
		8 급	3	행정3
	기능직	소계	2	
		7 급	1	운전1
		8 급	1	사무1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42	
보건행정과	계		25	
	일반직	소계	22	
		4급	1	기술1
		5급	4	의무3, 행정·보건1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 1(전임계약직),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7	보건2,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3, 간호1
		8급	5	행정1, 보건1, 의료기술3
	기능직	소계	3	
		9급	3	운전3
건강증진과	계		17	
	일반직	소계	16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6	보건1, 간호2, 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 보건·간호1
		7급	6	간호5, 보건1
		8급	3	보건2, 간호1
	기능직	소계	1	
		9급	1	운전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 5항 관련)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118	
옥 련 1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옥 련 2 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1	행정1
선 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사회복지1 행정·공업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 수 1 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연수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3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청학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복지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춘1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2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행정.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춘3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송도1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1	행정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송도2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2012년 조직개편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의 실제 사용부서로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 「고령자 고용촉진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명 변경 - 교육홍보과 → 정보통신과 - 재무과 → 재무회계과 - 건설과 → 건설방재과 ○ 사용부서 변경 - 의료급여사례관리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보육상담실상담원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5.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2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수표(제9조 관련)

1.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수

부 서 별	계	행정 보조원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계	국공유 재산 관리	의료 급여 사례 관리	보육 상담실 상담원	사서 보조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 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97	4	1	1	1	1	10	4			6	6	77
본 청	91	3	1	1	1		5	4			1	6	77
재무회계과	1	1	1										
정보통신과	1						1				1		
사회복지과	1	1		1									
가정복지과	1	1			1								
청소행정과	77												77
환경보전과	1						1	1					
건설방재과	7						1	1				6	
공원녹지과	2						2	2					
직 속 기 관 소 계	5						5				5		
보 건 소	5						5				5		
사 업 소 계	1					1							
어린이도서관	1					1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경찰	비 고
총 계	19	19	
본청소계	19	19	
총 무 과	19	19	